

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구간 이용 신청 공고

1. 대상 주차장: 망원2빛물펌프장

2. 신청 대상: 마포구 관내 거주자·사업자(재직자 포함)의 자동차 소유자

※ '거주자'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포구 관내인 사람을 말함.

※ 주차장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(기준일: 정기배정 이용 시작일)는 배정 제외, 배정 및 주차요금 납부 후라도 체납(미이행)이 확인되면 배정 취소함.

3. 배정 일정

이용 신청기간	배정 발표일시	주차료 납부기간	주차장 이용기간
2025. 6. 5.(목) ~ 6. 19.(목) (15일간)	2025. 6. 20.(금) 16:00 이후 (홈페이지 확인)	2025. 6. 23.(월) ~ 2025. 6. 27.(금) (카드결제, 가상계좌)	2025. 7. 1.(화) ~ 2025. 9. 30.(화) (이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 배정)

가.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임시 주차선으로 공사 등으로 이용정지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삭선 시에는 저득점자 순으로 배정 취소되고 대체 주차장 안내는 불가함.

나. 배정자 확정자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, 신청인이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개별 확인

다. 납부 기간 내에 미납 시 별도 개별 통보하지 않고 배정 취소됨.

4. 배정기준 및 조건: 붙임 '배정 기준 및 조건' 참조

5. 신청 방법: 인터넷(<http://eparking.mfmc.or.kr>)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
공단 방문{평일 09:00~18:00(점심시간:12:00~13:00)}

가. 제출서류

1) 기존 이용 고객 및 대기자(6개월 단위 점수에 의한 순환 배정)

- 별도 신청 및 제출서류는 없음(단, 변동사항 있을 시에만 제출)

2) 신규 신청자

- 거주자: 자동차등록증, 주민등록표 초본(주소변동 내역 포함한 상세본), 주민등록표 등본(동거인 이름 전부 표시)

- 사업자(재직자): 차량 등록증, 사업자 등록증(재직자는 재직 증명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)

*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(<https://eparking.mfmc.or.kr/Residence/InfoGuideTab1>)

※ 구간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25. 6. 19.까지만 가능

나. 유의사항

- 신청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직접 공단에 통보(증빙서류 첨부) 해야 하며 미 통보 및 공단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서류 요청에 미 협조 시에는 취소 및 배정 제외 사유에 해당이 됨.

6. 신청 구분 및 주차요금(관련 조례에 따라 할인 대상자에게는 할인 적용)

구분		전일(24시간)	주간(09:00~18:00)	야간(19:00~익일08:00)	비 고
주차요금 (월 요금)	거주자	4만원	3만원	2만원	일반구간 적용
	비거주자	5만원	3만5천원	2만5천원	일반구간 적용
	시설	5만원	3만6천원	2만4천원	비거주자 구분 없음

7. 그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주차관리부(☎ 02-300-5042~5045/
운영시간 평일 09:00~18:00(점심시간12:00~13:00)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2025. 6. 5.

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

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기준 및 조건

1. 배정 기준

- 가. 배정방법: 신청 자동차(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 기준) 및 거주 정보(주민등록 기준)를 기초로 아래 '배정표상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배정'
- 나. 배정대상(경기배정): 정기 배정 신청 기간 중 신청자
- ※ 정기 배정 이후에는 여유분 발생 시 우선 배정
- 다. 배정 우선순위(우선순위별 고득점 순으로 배정)
- 1순위: 배정(신청)일 현재 신청 동(洞) 내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상이 국가 유공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고도장애 및 중등도장애자 중 고득점 순
 - 동점 시 우선순위: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 ② 관내 전입일이 빠른 자
 - 2순위: 1순위 우선 배정 후 마포구 관내(이하 '관내') 거주자 중에서 고득점 순
 - 동점 시 우선순위: ① 관내 전입일이 빠른 자 ② 자동차 배타량이 적은 자동차
 - 3순위: 2순위 배정 후 비거주자(관내 사업자·재직자) 중 고득점 순
 - 동점 시 우선순위: ① 관내 사업·재직자는 그 사업장 재직기간이 빠른 자 ② 자동차 배타량이 적은 자동차

<표 1> 배정표

항목		점수	확인방법
거주자 (45점)	① 거주자 거주기간(관내 최종 전입일 기준) 점수	30 이하	주민등록표 초본 (관내 최종 전입일)
	거주 기간	1년 미만 3, 1년 ~2년 미만 5, 2년 ~3년 미만 7, 3년 ~4년 미만 10, 4년 ~5년 미만 13, 5년 ~10년 미만 15, 10년 ~15년 미만 20, 15년 ~20년 미만 25, 20년 이상 30	
	② 거리 점수(거주지와 주차구획의 거리 기준)	15 이하	공단 관리 프로그램
	거리	10m 미만 15, 10m ~30m 미만 10, 30m ~50m 미만 7, 50m 이상 3	
공통 점수 (40)	차종별 (5)	5	자동차 등록증
	① 경차(배기량 1000cc 미만)	2	
	② 소형차(배기량 1000cc 이상 ~ 1600cc 미만)	10	복지카드/국가보훈 등록증/장애인주차표지(달팽이)
	③ 중형차(배기량 1600cc 이상 ~ 2000cc 미만)	5	
	④ 기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동차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(경도장애)의 자동차(마포구관내 거주자)	5	
	*단 복지카드와 장애인주차표지의 동일이 상이한 경우 장애인주차표지의 점수를 우선 함		
	친환경 자동차 (최대 5점)	5	환경부 조화내역 제출
	①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저공해 등록 자동차(중형차 이상 '저공해' '하이브리드' 표시)	3	저공해 스티커
	친환경 1등급 차량의 경우 저공해 등록 자동차 3점 중복점수 미인정		
	[다둥이 행복카드] 소지자 (8)	3	주민등록표 등본/서울시 다둥이카드
비 거주자 (45)	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유 자동차 (단, 소유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일 것)	5	자동차 등록증
	공유사업 참여/신청기간 4개월 (이용기간 시작일 - 정기배정 발표 전일까지)	5 이하	모두의 주차장 확인
	① 전일 배정 기준		
	공유 시간	50시간 미만 0, 50시간 이상 1, 250시간 이상 3, 400시간 이상 5	
	② 주·야간 배정 기준		
	공유 시간	25시간 미만 0, 25시간 이상 1, 125시간 이상 3, 200시간 이상 5	
비 거주자 (45)	장기 대기자	5 이하	점수대기 신청기간 (공단 관리 프로그램)
	대기 기간	1회 (6개월) 1, 2회 (1년) 2, 3회 (1년6개월) 3, 4회 (2년) 4, 5회 이상 (2년초과) 5	
비 거주자 (45)	① 관내 사업 기간(재직자는 재직기간) 점수	30 이하	사업자 등록증/재직증명서
	재직 기간	1년 미만 3, 1년 ~2년 미만 5, 2년 ~3년 미만 7, 3년 ~4년 미만 10, 4년 ~5년 미만 13, 5년 ~10년 미만 15, 10년 ~15년 미만 20, 15년 ~20년 미만 25, 20년 이상 30	
	※ 사업자는 관내 사업 개시일(재직자는 해당 업체 재직 시작일)을 기준으로 관내 사업 개시일 이전 일수(재직자는 관내 사업 개시일부터) 기간을 가산함		
	② 거리 점수(사업장 소재지와 주차구획의 거리 기준)	15 이하	공단 관리 프로그램
	거리	10m 미만 15, 10m ~30m 미만 10, 30m ~50m 미만 7, 50m 이상 3	

※ 비고

- 장애인 점수는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부여함(단, 가점을 동일 세대에 중복 부여하지 않음)
- 거리 점수는 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제 프로그램상 거리정보를 기준함
- 위 배정표의 해석상 특히 필요하면 공단이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음
- 공유점수는 차량번호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차량번호 변경 시 변경전 적용된 점수는 정기 배정 점수 기간에 합산 요건을 해하여, 합산 요건 없을 경우 변경된 차량의 공유시간만 산정하여 점수 부여함
- 시설주차장은 공유점수 산정 제외함

2. 배정 제외 대상

- 가. 관련 법령상 차고지(주차장)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
- 나. 동일 주소지의 신청인이 자동차를 2개 구획(전용구획 포함)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또는 2대 이상의 차량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
- ※ 1세대 당 1구획, 1차량만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 구획 및 차량은 공단 직권으로 배정 제외
- 다. 기존 사용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임으로 훼손한 자의 자동차
- 라. 불법 주차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의 자동차 (마포구 체납 한정)
- 마. 기타 관련 법령(조례 및 방침 포함) 등에서 정하는 경우

바. 전수조사 및 서류 확인 등으로 서류 재요청 시 기한 내 미제출자의 자동차(배정 후에 미제출시 배정 취소)

3. 거주자주차장 배정(지정) 및 이용 원칙

- 가. 배정은 1가구 차량 1대 배정을 원칙으로 함.
- 나. 거주자인 신청자가 직계 존비속(부부 포함) 또는 형제자매의 소유 자동차로 신청하면 거주자로 간주함(단,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 시에 한함)
- 다. 주차장은 개별 구획 배정이 아닌 구간제(구간 공동 이용제)로 배정하며 이용 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고 주차요금은 선납해야 함.
- ※ 단, 분납 신청 시 3개월 단위 분납만 가능
- 라. 주차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별도 예고 없이 배정 취소하고 취소분은 후순위(대기자)에게 배정함.
- 마. 거주자가 리스차량 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자동차(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거주자로 배정함).
- ※ 사실관계 확인 결과 리스차량, 재직중 회사 차량, 법인차 또는 고용노동부 피보완 지역 내역서
- 바. 차량 크기 2m×5.5m 미만의 차량만 신청 가능(특수건설 장비 등 신청 불가)
- ※ 시설 주차장은 높이 2.1m~2.3m로 이용 신청 전 문의(주차장별 다른)
- 사.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이 없어지거나 교통문제 등 기타 사유로 이용 불가 시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배정 후순위자 중 저득점자순으로 배정 취소 및 환불함.
- 아. 도로 공사 등 각종 공사 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.
- 자. 중도 이용 해지·포기 시에는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모두 환불함(*영입일 기준 15일 이내)
- ※ 환불 후 동일 기간 재배정 불가(대기 신청 원칙)
- 차. 배정받은 주차장은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.
- (배정자의 오토바이, 물건적치, 미배정 차량과 교대 주차 등 금지)
- 카. 차량 변경 시 배정점수를 재산정하여 재배정하며, 차량 변경 전 부여되었던 가점을 인정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[재배정 탈락 시 변경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(신청일로부터 말일까지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는 다음 달 10일)까지 이용 가능]
- 단, 차량수리로 인한 차량 변경 시에는 배정점수를 재산정하지 않음.
- (수리 기간 중빙서류 제출)
- 타. 법률 혹은 조례 개정 시 할인을 적용 및 폐지에 대해 사용 시작일 기준 으로 해당 분기 배정 마감일까지의 할인 요금을 적용함
- (예: 7월 9일이 할인을 폐지 시행일이면, 7월 9일까지 할인 적용/7월 9일부터 할인 미적용)
- 파.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거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주차장으로 개인의 사유지가 아님을 인지하고, 신청 및 배정자는 공유사업인 "모두의 주차장"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함.
- ※ 공유자의 적립금은 월 최대 4만원(24. 7. 1.부터 시행)

4. 배정 취소 요건(우리 공단 직권 취소 또는 영구 제외)

- 가. 배정 후 주차요금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
- 나. 신청서 허위(착오) 기재, 신청 관련 서류의 허위 및 조작 등 이 발견된 경우 ※ 이 경우 배정 전·후를 불문하고 배정이 취소됨.
- 다. 공사 등으로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어지는 경우
- 라. 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(공유주차 제외)
- 마. 그 밖에 이용자가 배정(지정) 원칙, 사용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5. 그 밖의 주차장 사용 조건(유의 사항)

- 가.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 및 도난은 우리 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차장 수탁 관리자인 공단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.
- 나. 정당한 배정 차량, 이용 기간,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(견인) 대상이 됨.
- 다.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, 미확인(또는 누락)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(이용자)의 책임임.
- 라.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.
- 마. 마포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 신청한 자나 배정 받은 자는 모두 이 '배정 기준 및 조건'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.
- 바.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.
- 사. 그 밖에 이 '배정기준 및 조건'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 공단의 해석을 우선함.

6. 주차요금 기준(월정)

구분	전 일 (24시간)	주간 (09시~18시)	야간 (19시~익일08시)	비 고
거주자	4만원	3만원	2만원	일반구간 적용
비거주자	5만원	3만5천원	2만5천원	일반구간 적용
시설주차장	5만원	3만6천원	2만4천원	비거주자 구분 없음